



4724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45 (부전1동)  
T. 051-802-2081, 051-1366  
F. 051-802-2080

# 202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보고서

2024 Digital Sexual Crimes Victims Support Center  
Support Report





202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보고서

2024 Digital Sexual Crimes Victims Support Center  
Support Report



# CONTENTS

## About

지역 내 다양한 여성폭력 피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365일 24시간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이젠센터**입니다.

## I 센터개요 07

- 1. 이젠센터 개요 07
- 2.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과정 09
  -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통합지원 과정 09
  - 2) 피해촬영물 삭제 모니터링지원 과정 09

## II 피해자 지원 실적 13

- 1. 피해지원 13
  - 1) 피해지원 현황 13
  - 2) 최초 인입 경로 14
  - 3) 피해 인지 경로 14
  - 4) 피해자 피해 당시 연령 15
  - 5) 피해자 성별 16
  - 6) 피해자 성별 연령대 16
  - 7) 피해 유형 23
  - 8) 연령대별 피해 유형 24
  - 9) 성별 피해 유형 25
  - 10) 피-가해자 관계 26
    - 1) 가해자 가해 당시 나이 27
- 2. 삭제지원 29
  - 1) 삭제·유포 모니터링지원 현황 29
  - 2) 플랫폼별 삭제요청 29
  - 3) 유형별 현황 31

## III 지원사업 35

- 1. 사업소개 35
- 2. 사업별 운영 결과 37
  - 1) 아동·청소년 피해회복 및 예방 프로그램 37
  - 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38
  - 3) 여성폭력 예방 콘텐츠 공모전 39
  - 4)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홍보 40
  - 5) 디지털성범죄대응 사이버감시단 41
  - 6) 피해자통합지원 전문가 자문단 42

## IV 부록 47

- 1. 전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 전문기관 47



Chapter.

01

<b>I 센터개요</b>	<b>07</b>
1. 이젠센터 개요	07
2.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과정	09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통합지원 과정	09
2) 피해촬영물 삭제 모니터링지원 과정	09

## I. 센터개요

## 1. 이젠센터 개요

이젠센터는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조례 제 6조의 2에 근거하여 설치한 센터로 (재)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다양한 여성폭력 피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365일 24시간 원스톱 통합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이젠센터 개요

기관명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이젠센터)	법인	(재)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45(부전1동)		
설립일	2022년 9월 23일(개소)		
설립근거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6조의2		
센터규모	건물연면적 673.72m <sup>2</sup> (지상 1-3층)		

## • 비전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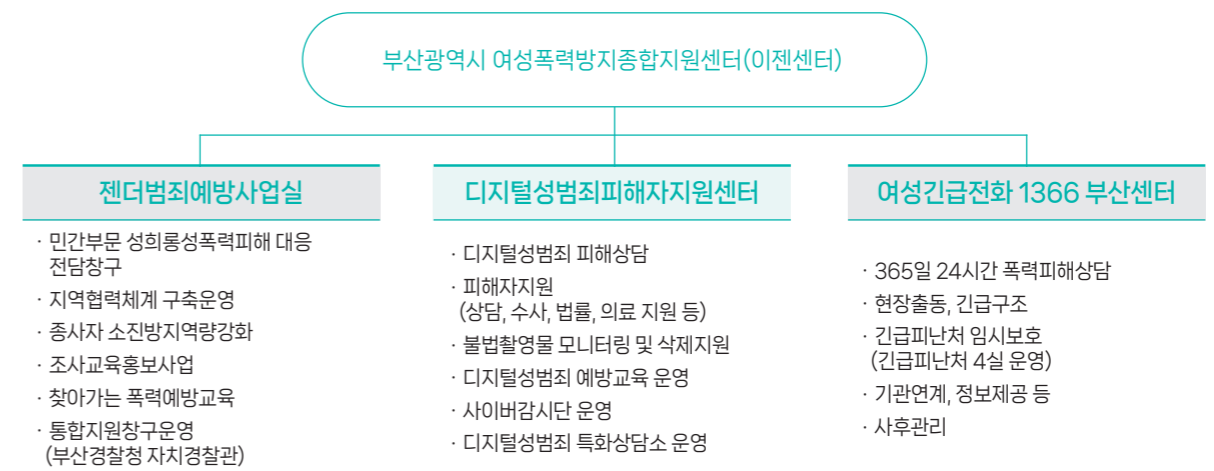
## VISION

부산지역 여성폭력방지 지원의 거점기관 역할 수행  
(부산형 여성폭력방지 플랫폼)

## GOAL

- 여성폭력 피해지원을 위한 기반 강화
- 여성폭력 피해 대응 지역협력체계 활성화
- 지역사회 인식개선
- 대시민서비스 향상 및 만족도 제고

## • 이젠센터 조직도(1실 2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I  
센터개요

## 1. 센터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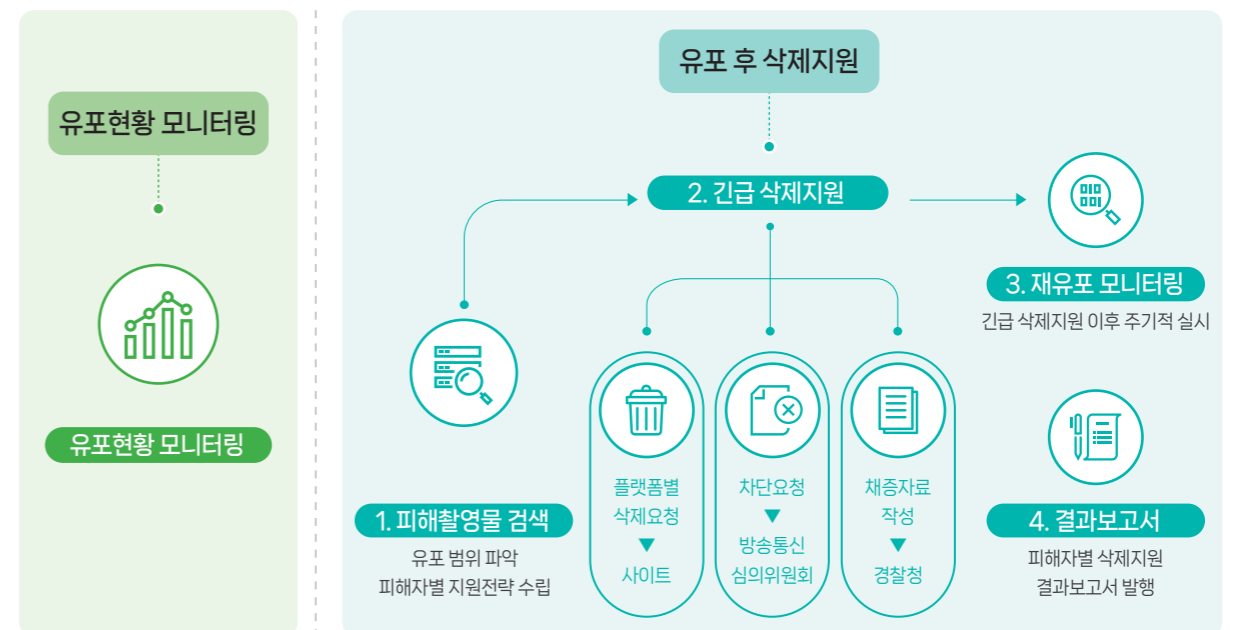
### 1. 센터개요

## 2.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과정

###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통합지원 과정



### 2) 피해촬영물 삭제·모니터링지원 과정



# 센터개요

## 2.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과정

-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통합지원 과정
- 2) 피해촬영물 삭제 모니터링지원 과정



Chapter.  
02

<b>II 피해자 지원 실적</b>	<b>13</b>
1. 피해지원	13
1) 피해지원 현황	13
2) 최초 인입 경로	14
3) 피해 인지 경로	14
4) 피해자 피해 당시 연령	15
5) 피해자 성별	16
6) 피해자 성별 연령대	16
7) 피해 유형	23
8) 연령대별 피해 유형	24
9) 성별 피해 유형	25
10) 피-가해자 관계	26
11) 가해자 가해 당시 나이	27
2. 삭제지원	29
1) 삭제·유포 모니터링지원 현황	29
2) 플랫폼별 삭제요청	29
3) 유형별 현황	31

II. 피해자 지원 실적

1. 피해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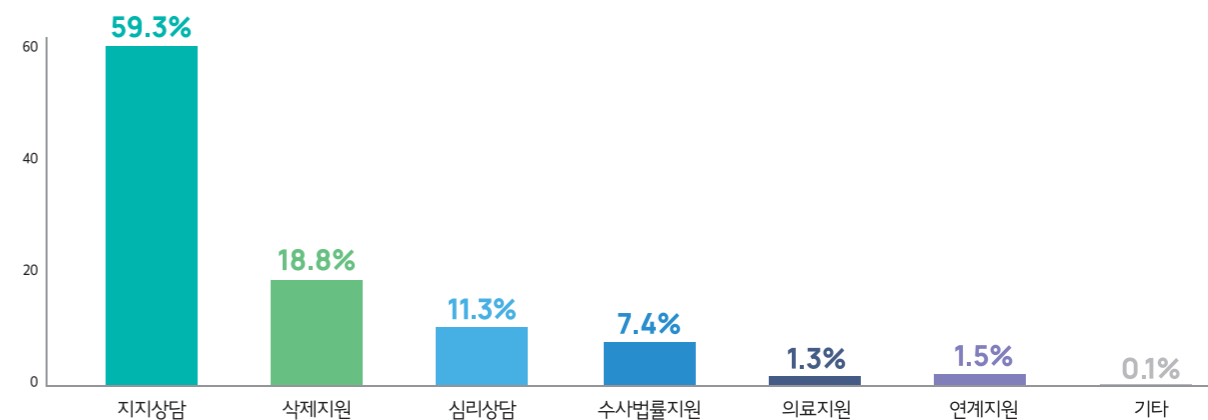
1) 피해지원 현황

(단위: 건)

피해자(명)	지원 건수(건)							총 합계
	지지 상담	삭제 지원	심리 상담	수사·법률 지원	의료 지원	연계 지원	기타	
233명	2,414 (59.3%)	768 (18.8%)	460 (11.3%)	301 (7.4%)	54 (1.3%)	64 (1.5%)	5 (0.1%)	4,066 (100.0%)

[표 1] 총 지원 현황

※ 피해자별 중복지원 가능  
※ 선제적 삭제 미포함



• 지원기간 | 2024. 1. 1. ~ 2024. 12. 31.(12개월)

• 작성기준

- 2024년도 인입된 피해자(수)
- 2024년 인입된 피해자 지원(건)수 (2022년부터 지속 지원하는 피해자 및 지원 건수 포함)
- 지원보고서 전체 표의 항목별 백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입하여, 합산시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2024년 지원 건수는 총 4,066건으로 그 중 지지상담이 2,414건으로(5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삭제지원 768건(18.8%), 심리상담 460건(11.3%)으로 나타났다.

• 피해자 지원 현황 중 기타지원은 피해자에게 피해지원(상담·삭제·수사·법률·의료 등)과관련하여 지원절차 또는 지원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심리상담은 전문가 심리 상담을 통한 개인상담을 제공한 것으로 지원과정에서 촉발되는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을 다루기 위한 단순상담인 지지상담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지지상담안에는 정보제공도 포함해서 집계를 했다.

## II 피해자 지원 실적

### 1. 피해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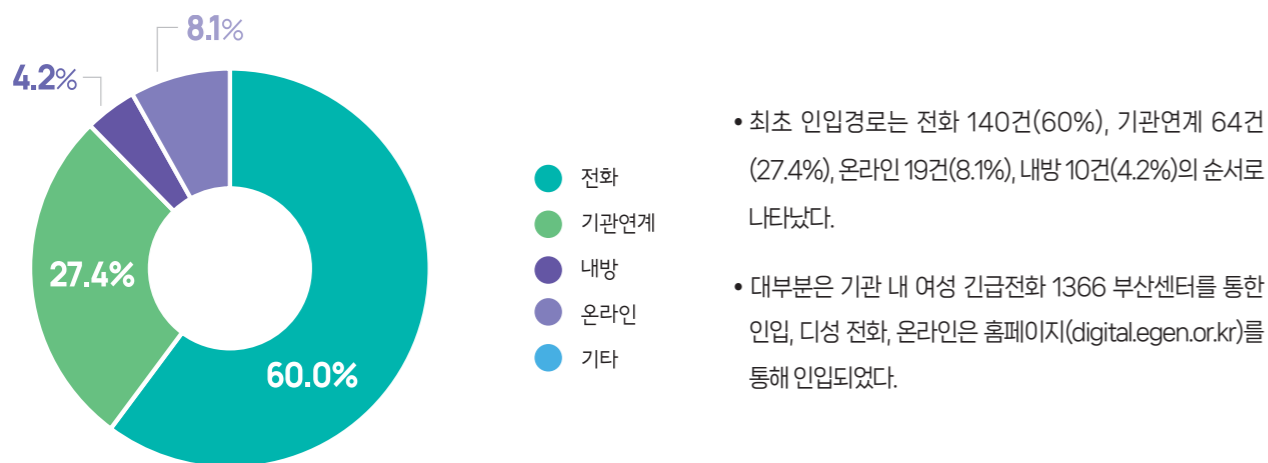
- 1) 피해지원 현황
- 2) 최초 인입 경로
- 3) 피해 인지 경로
- 4) 피해자 피해 당시 연령
- 5) 피해자 성별
- 6) 피해자 성별 연령대
- 7) 피해 유형
- 8) 연령대별 피해 유형
- 9) 성별 피해 유형
- 10) 피-가해자 관계
- 11) 가해자 가해 당시 나이

## 2) 최초 인입 경로

(단위: 건)

합계	전화	기관연계	내방	온라인	기타
233 (100.0%)	140 (60.0%)	64 (27.4%)	10 (4.2%)	19 (8.1%)	0 (0.0%)

[표 2]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최초 인입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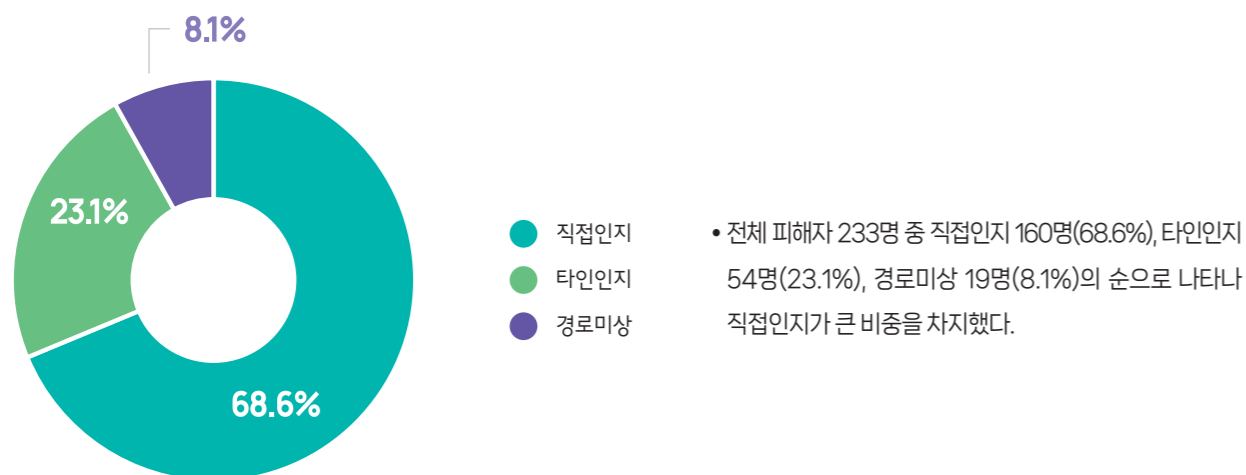


## 3) 피해 인지 경로

(단위: 명)

합계	직접인지	타인인지	경로미상
233 (100.0%)	160 (68.6%)	54 (23.1%)	19 (8.1%)

[표 3] 피해 인지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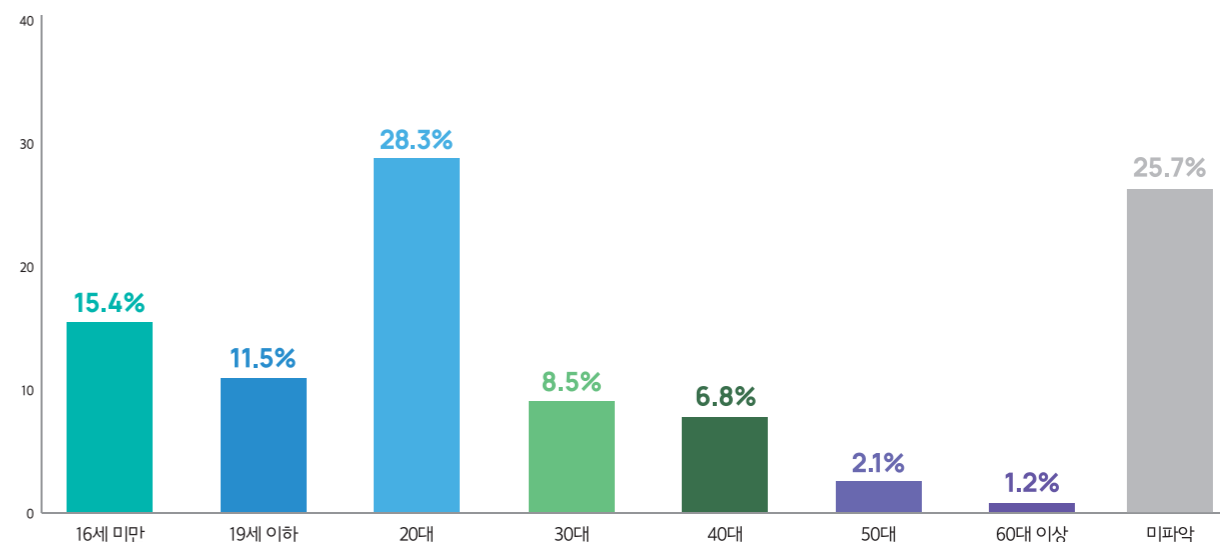


## 4) 피해자 피해 당시 연령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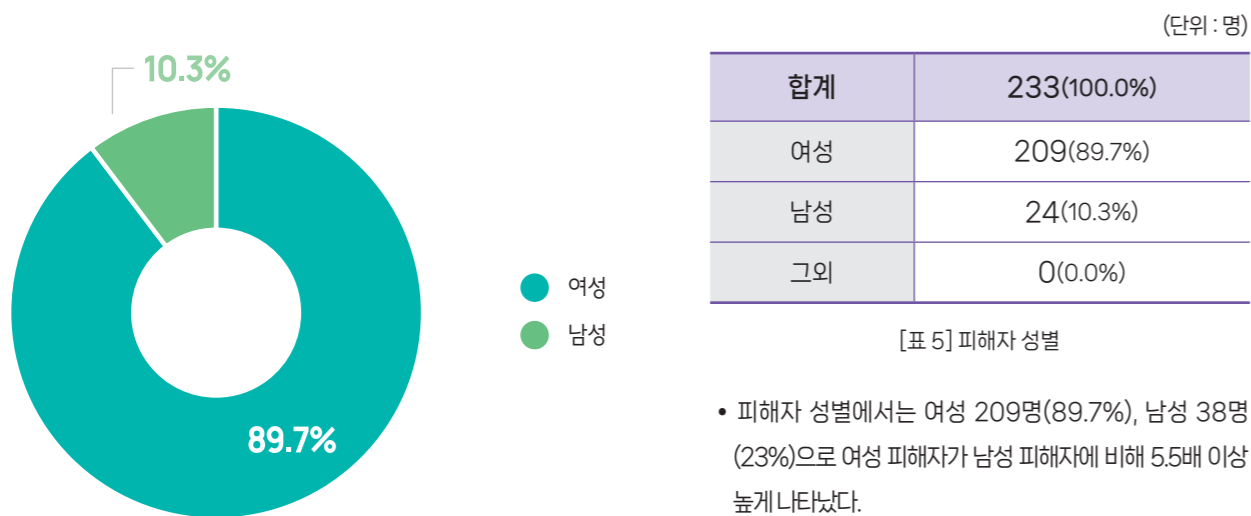
합계	16세 미만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파악
233 (100.0%)	36 (15.4%)	27 (11.5%)	66 (28.3%)	20 (8.5%)	16 (6.8%)	5 (2.1%)	3 (1.2%)	60 (25.7%)

[표 4] 피해자 피해당시 연령



- 의제강간 해당 기준 연령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해 당시 10대인 피해자의 연령을 16세 미만, 19세 이하로 구분하였다.
- 피해자들의 피해 당시 연령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대 66명(28.3%), 미파악 60명(25.7%), 16세 미만 36명(15.4%), 19세 이하 27명(11.5%), 30대 20명(8.5%), 40대 16명(6.8%), 50대 5명(2.1%), 60대 3명(1.2%)순으로 나타났다.
- 10대(19세 이하) 경우 총 63명(26.9%), 20대 66명(28.3%)으로 10~20대는 전체의 55.2%를 차지하여 디지털기기 사용이 원활한 연령대에서 더욱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024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중 가장 피해율이 높은 연령은 20대 66명(28.3%)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 현상이 전연령에 분포되어 있어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연령과 상관없이 발생됨을 알 수 있다.

### 5) 피해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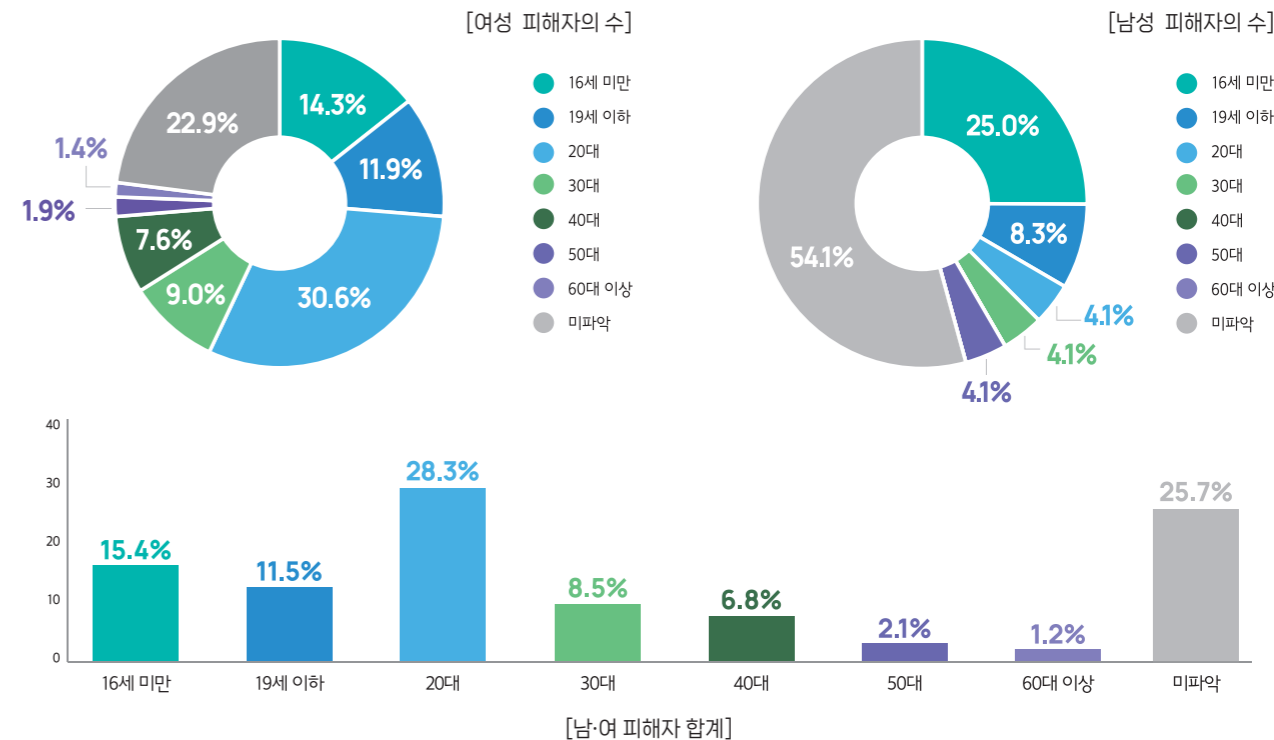


### 6) 피해자 성별 연령대

피해자 수	구분	16세 미만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파악	합계
233	여성	30 (14.3%)	25 (11.9%)	64 (30.6%)	19 (9.0%)	16 (7.6%)	4 (1.9%)	3 (1.4%)	48 (22.9%)	209 (100.0%)
	남성	6 (25.0%)	2 (8.3%)	1 (4.1%)	1 (4.1%)	0 (0.0%)	1 (4.1%)	0 (0.0%)	13 (54.1%)	24 (100.0%)
	합계	36 (15.4%)	27 (11.5%)	66 (28.3%)	20 (8.5%)	16 (6.8%)	5 (2.1%)	3 (1.2%)	60 (25.7%)	233 (100.0%)

[표 6] 피해자 성별 연령

• 피해자 성별 연령대를 살펴보면 여성 피해자 209명 중 20대가 64명(30.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6세 미만 30명(14.3%), 19세 이하 25명(11.9%)으로 나타났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 24명 중 미파악이 총 13명(54.1%)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16세 미만의 피해자가 다음으로 6명(25.0%)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징을 살펴보면 여성 피해자의 경우 16세 미만과 19세 이하가 각 30명(14.3%)과 25명(11.9%)로 총 55명(26.2%)으로 나타났다. 50대, 60대 이상이 각 7명(3.3%)로 나타났고, 여성 피해자의 경우 20대와 10대 피해자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으나, 남성 피해자는 54.1%로 나타나 피해자 연령대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 피해 유형별 기준 및 디지털 성폭행 피해의 유형·예시·근거법률

#### ○ 디지털성폭력 피해의 유형·예시·근거법률

피해유형	정의	예시	처벌 근거 법률
불법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나 그 외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신체의 일부나 사적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	※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에 초소형 카메라나 핸드폰을 설치하여 상대방의 가슴이나 성기 부위 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경우 ※ 성행위 장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청소년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1항
유포/재유포	성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하는 경우	※ 동의/비동의의 촬영 성적 영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2항, 제3항 「청소년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2항, 제3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유포협박	성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	※ 동의/비동의의 성적 영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형법 제283조 협박죄

불법합성·편집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경우	※ 상대방의 일상 사진 등 일반 영상물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사이버 공간내 성적괴롭힘	사이버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 등을 포함한 음성,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휴대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촬영물을 일방적으로 전송한 경우  ※ SNS, 문자, 전자우편, 공개커뮤니티, 게임채팅, 모바일앱 등 사이버 공간 내에서 사진을 합성하거나 신상을 유포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형법 제311조 모욕죄
유포불안	유포여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촬영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	※ 불법촬영 피해 또는 성적 영상물 유포에 대한 불안을 겪는 경우	
몸캠피싱	성적 촬영물을 빌미로 상대방에게 기망을 하거나,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	※ 온라인을 통해 확보한 성적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350조 공갈죄
온라인그루밍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성적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경우	※ 미성년자를 대화방에 초대하여 성인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는 경우  ※ 미성년자에 대한 길들이기를 통하여 음란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보내도록 하여 유포하거나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아동·청소년매매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기타	위 유형 중 포함되지 않는 경우		

● 피해유형별 처벌법률 소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규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 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4. 10. 16.>
-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4. 10. 16.>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24. 10. 16.>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24. 10. 16.>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신설 2020.5.19, 2024. 10. 16.>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4. 10. 16.>

####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의2(벌칙) 제48조 제2항(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라. 형법

#### 협박죄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307조(명예훼손)

-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7조(사기)

-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50조(공갈)

-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피해유형 분류기준

**불법촬영**

대상자의 동의없이 카메라나 그 외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신체일부나 사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

**유포/재유포**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재유포 하는 경우 (촬영에 대한 동의와는 상관없음)

**유포협박**

성적 촬영물을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

**유포불안**

유포 여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촬영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

**합성·편집(딥페이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사이버 공간내 성적괴롭힘**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 등을 포함한 음성,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몸캠피싱**

온라인(채팅앱, 영상통화 등)을 통해 확보한 성적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

**온라인그루밍**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성적 대화 시도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경우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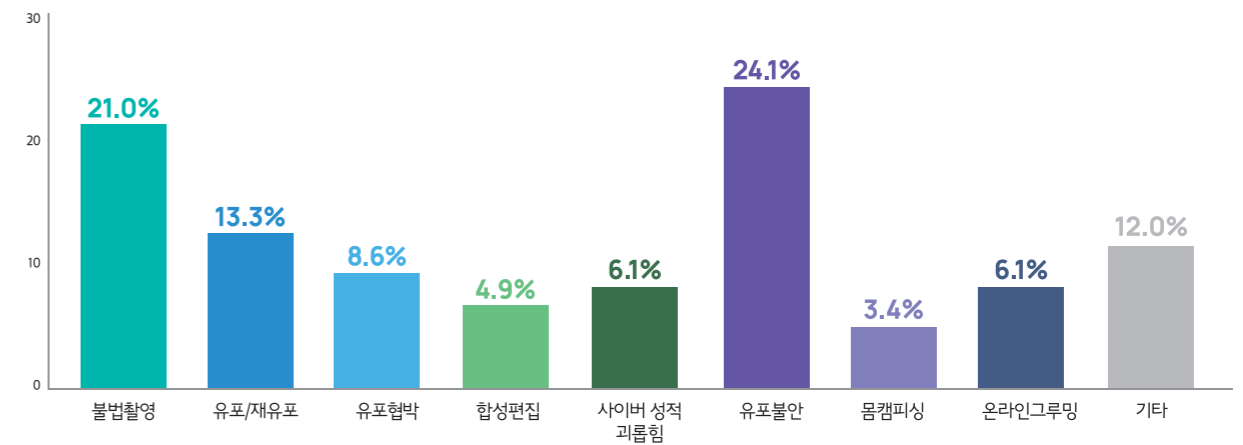
위 유형 중 포함되지 않는 경우

7) 피해 유형

(단위: 건)

합계	불법 촬영	유포/재유포	유포 협박	합성 편집	사이버 성적 괴롭힘	유포 불안	몸캠 피싱	온라인 그루밍	기타
323건 (100%)	68 (21.0%)	43 (13.3%)	28 (8.6%)	16 (4.9%)	20 (6.1%)	78 (24.1%)	11 (3.4%)	20 (6.1%)	39 (12.0%)

[표 7] 피해 유형



- 피해자 233명이 최초 호소한 피해 유형을 중복집계 하였다.
- 피해 유형으로 유포불안이 78건(24.1%), 불법촬영 68건(21.0%), 유포/재유포 43건(13.3%), 그 외 39건(12.0%), 유포협박 28건(8.6%) 사이버성적괴롭힘과 온라인 그루밍이 각각 20건(6.1%), 합성편집 16건(4.9%), 몸캠피싱 11건(3.4%)의 순서로 나타났다.
- 이 중에서 유포 불안, 불법촬영, 유포/재유포의 피해 유형 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8) 연령대별 피해 유형

(단위: 건)

구분	합계	불법 촬영	유포/재유포	유포 협박	합성 편집	사이버 성적 괴롭힘	유포 불안	몸캠 피싱	온라인 그루밍	기타
16세미만	59 (100.0%)	8 (13.5%)	3 (5.0%)	7 (11.8%)	4 (6.7%)	4 (6.7%)	16 (27.1%)	2 (3.4%)	13 (22.0%)	2 (3.3%)
19세이하	36 (100.0%)	7 (19.4%)	6 (17.1%)	2 (5.7%)	3 (8.5%)	0 (0.0%)	11 (30.5%)	0 (0.0%)	7 (19.4%)	0 (0.0%)
20대	98 (100.0%)	24 (24.4%)	15 (15.3%)	11 (11.2%)	5 (5.1%)	6 (6.1%)	24 (24.4%)	3 (3.0%)	0 (0.0%)	10 (10.2%)
30대	32 (100.0%)	11 (34.3%)	7 (21.8%)	1 (3.1%)	0 (0.0%)	2 (6.2%)	9 (28.1%)	0 (0.0%)	0 (0.0%)	2 (6.2%)
40대	17 (100.0%)	5 (29.4%)	3 (17.6%)	0 (0.0%)	0 (0.0%)	1 (5.8%)	7 (41.1%)	0 (0.0%)	0 (0.0%)	1 (5.8%)
50대	5 (100.0%)	0 (0.0%)	0 (0.0%)	0 (0.0%)	0 (0.0%)	1 (20.0%)	1 (20.0%)	0 (0.0%)	0 (0.0%)	3 (60.0%)
60대이상	5 (100.0%)	1 (20.0%)	0 (0.0%)	0 (0.0%)	0 (0.0%)	1 (20.0%)	0 (0.0%)	0 (0.0%)	0 (0.0%)	3 (60.0%)
미파악	71 (100.0%)	12 (16.9%)	9 (12.5%)	7 (9.7%)	4 (5.5%)	5 (7.0%)	10 (14.0%)	6 (8.3%)	0 (0.0%)	18 (25.0%)
합계	323 (100.0%)	68 (21.0%)	43 (13.3%)	28 (8.6%)	16 (4.9%)	20 (6.1%)	78 (24.1%)	11 (3.4%)	20 (6.1%)	39 (12.0%)

[표 8] 연령대별 피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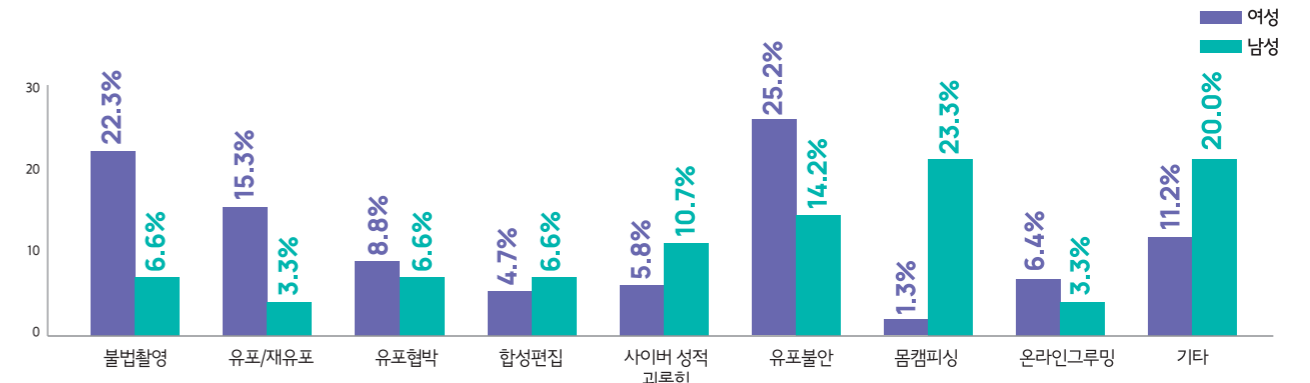
- 유포불안 및 불법촬영에 대한 피해 유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 연령대에서 비교하면 유포불안은 78건(24.1%), 불법촬영은 68건(21.0%)으로 나타났다.
- 16세 미만의 경우 유포불안이 16건(2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온라인 그루밍 피해유형도 13건(22.0%)으로 두 번째로 높게 분포되었다. 19세 이하의 경우 유포불안이 11건(30.5%)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불법촬영과 온라인 그루밍 피해유형도 7건(19.4%)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20대는 불법촬영과 유포불안이 각각 24건(24.4%)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 외에도 유포/재유포 15건(15.3%)과 유포협박 11건(11.2%)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30대는 불법촬영이 11건(34.3%) 40대는 유포불안 7건(41.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0대는 유포불안 1건(20.0%), 60대 이상은 불법촬영 1건(20.0%), 사이버성적괴롭힘 1건(20.0%)으로 나타났다. 피해연령대가 파악되지 않은 미파악의 경우는 불법촬영 12건(16.9%)과 유포불안 10건(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9) 성별 피해 유형

(단위: 건)

구분	합계	불법 촬영	유포/재유포	유포 협박	합성 편집	사이버 성적 괴롭힘	유포 불안	몸캠 피싱	온라인 그루밍	기타
여성	295 (100.0%)	66 (22.3%)	45 (15.3%)	26 (8.8%)	14 (4.7%)	17 (5.8%)	74 (25.2%)	4 (1.3%)	19 (6.4%)	33 (11.2%)
남성	28 (100.0%)	2 (6.6%)	1 (3.3%)	2 (6.6%)	2 (6.6%)	3 (10.7%)	4 (14.2%)	7 (23.3%)	1 (3.3%)	6 (20.0%)
계	323 (100.0%)	68 (23.2%)	43 (13.3%)	28 (8.6%)	16 (4.9%)	20 (6.8%)	78 (26.6%)	11 (3.4%)	20 (6.8%)	39 (12.0%)

[표 9] 성별 피해 유형



- 피해 유형은 피해자 233명의 최초 호소 유형을 중복집계하였다.
- 성별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유포불안의 피해가 74건(25.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불법촬영의 피해 66건(22.3%), 유포/재유포 45건(15.3%), 유포협박 26건(8.8%), 온라인그루밍 19건(6.4%), 사이버성적괴롭힘 17건(5.8%), 합성편집 14건(4.7%), 몸캠피싱 4건(1.3%)의 순서로 나타났다.
- 남성의 경우 몸캠피싱 7건(23.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포불안 4건(14.2%), 사이버성적괴롭힘 3건(10.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특히 여성과 남성 모두 피해유형 중 유포불안의 피해유형이 높게 나타나는데, 유포불안은 피해촬영물이 실제 유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유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불안을 호소하는 것이다. 유포 여부를 확인할 순 없으나, 피해자가 유포불안을 호소하는 경우 유포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유포현황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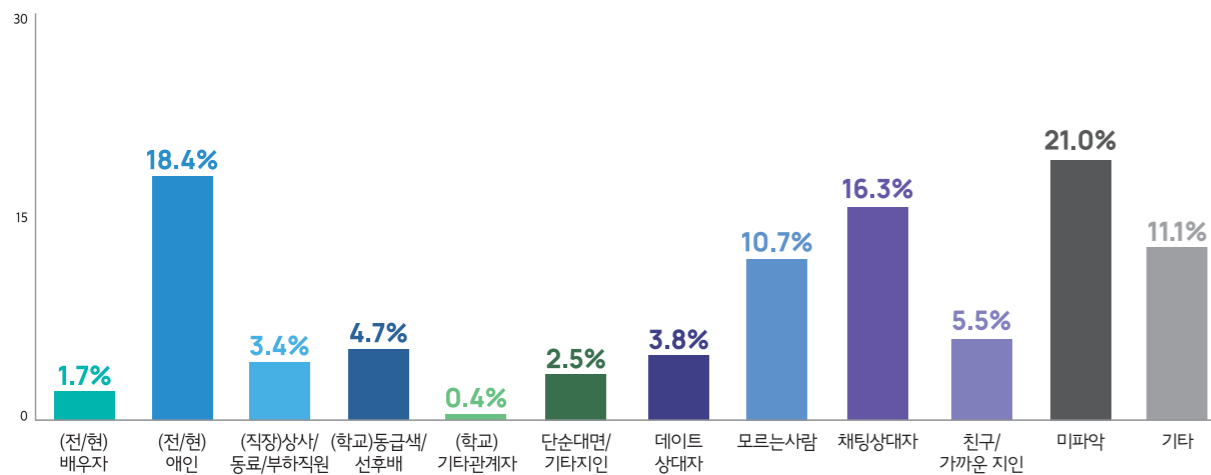
10) 피-가해자 관계

(단위: 건)

합계	(전/현) 배우자	(전/현) 애인	(직장) 상사/ 동료/ 부하직원	(학교) 동급생/ 선후배	(학교) 기타 관계자	단순 대면/ 기타 지인	데이트 상대자	모르는 사람	채팅 상대자	친구/ 가까운 지인	미파악	기타
233 (100.0%)	4 (1.7%)	43 (18.4%)	8 (3.4%)	11 (4.7%)	1 (0.4%)	6 (2.5%)	9 (3.8%)	25 (10.7%)	38 (16.3%)	13 (5.5%)	49 (21.0%)	26 (11.1%)

[표 10] 피-가해자 관계

-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유형을 살펴본 결과 미파악이 49건(21.0%)로 가장 높았고, (전/현) 애인 43건(18.4%), 채팅 상대자 38건(16.3%), 기타 26건(11.1%), 모르는 사람 25건(10.7%), 친구/가까운 지인 13건(5.5%), (학교)동급생/선후배 11건(4.7%), (직장)상사/동료/부하직원 8건(3.4%) 단순 대면/기타지인 6건(2.5%) (학교) 기타 관계자 1건(0.4%)순으로 파악되었다.
- 학교 동급생/선후배 항목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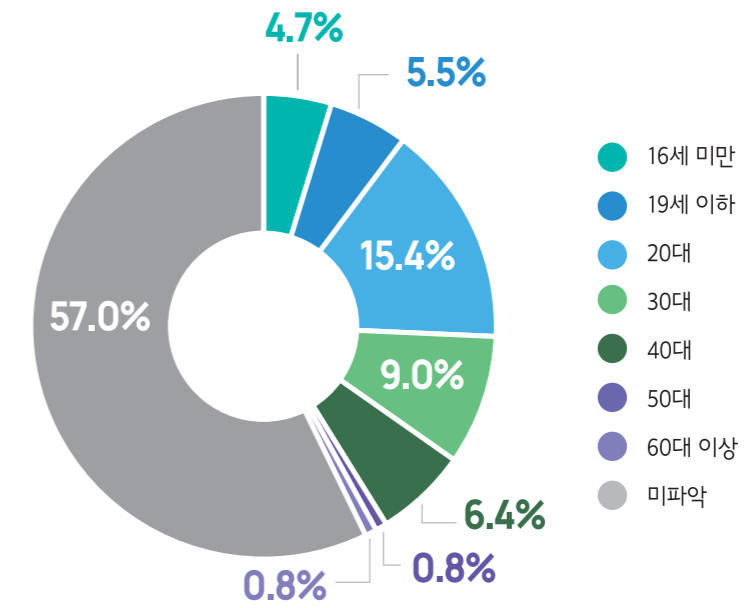


11) 가해자 가해 당시 나이

(단위: 건)

합계	16세 미만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파악
233 (100.0%)	11 (4.7%)	13 (5.5%)	36 (15.4%)	21 (9.0%)	15 (6.4%)	2 (0.8%)	2 (0.8%)	133 (57.0%)

[표 11] 가해자 가해 당시 나이



- 가해 당시의 가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가해자의 연령이 파악되지 않은 미파악이 133건(57.0%)로 나타났고, 20대 36건(15.4%), 30대 21건(9.0%), 40대 15건(6.5%), 19세 이하 13건(5.5%), 16세 미만 11건(4.7%), 50대 2건(0.8%), 60대 이상 2건(0.8%)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가해자의 연령이 파악되지 않는 것은 익명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성범죄의 특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표10]에서 피-가해자의 관계에서 채팅상대자가 가장 높았던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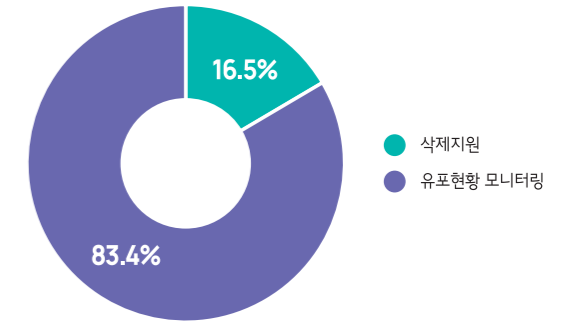
II. 피해자 지원 실적

2. 삭제지원

1) 삭제·유포 모니터링지원 현황

(단위: 건)

합계	삭제지원	유포현황 모니터링
4,654 (100.0%)	768 (16.5%)	3,886 (83.4%)



[표 12] 삭제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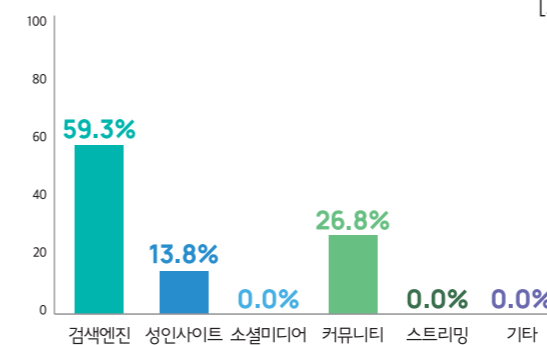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불법촬영물, 합성편집물, 비동의유포물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온라인에 유포되었거나 유포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피해촬영물의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지원조치를 의미한다.
- 삭제지원은 선제적 삭제를 포함하여 삭제/차단 요청에 따른 처리완료 건을 집계하였다. 삭제지원의 대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합성편집물, 비동의유포물 등이다.
- 2024년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건수는 총 4,654건으로 유포현황 모니터링은 총 3,886건(83.4%), 삭제지원은 768건(16.5%)로 나타났다.
- 유포현황 모니터링은 피해자의 유포여부와 상관없이 유포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 유포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원이다. 유포현황 모니터링 과정에서 유포가 확인된 피해자는 삭제지원으로 전환된다. 유포모니터링은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지원이며 삭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URL을 찾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이며 삭제지원의 형태이다. 유포피해물이 확인되면 삭제지원을 하며 유포 현상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는 유포 모니터링을 통해 URL이 발견되면 삭제지원에 들어간다. 피해촬영물, 썸네일, 키워드 등 유포 관련 정보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

2) 플랫폼별 삭제요청

(단위: 건)

합계	검색엔진	성인사이트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스트리밍	기타
768 (100.0%)	456 (59.3%)	106 (13.8%)	0 (0.0%)	206 (26.8%)	0 (0.0%)	0 (0.0%)

[표 13] 플랫폼별 삭제요청



- 선제적 삭제를 포함한 플랫폼별 삭제요청 건수이다.
- 검색엔진을 통해 유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유포물이 발견되면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한다.
- 주요 유포처로는 성인사이트, 커뮤니티 등이 있다.
- 유포 사이트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속적 삭제 요청을 하고, 동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다.

# II 피해자 지원 실적

## 2. 삭제지원

- 1) 삭제·유포 모니터링지원 현황
- 2) 플랫폼별 삭제요청
- 3) 유형별 현황

● 피해촬영물이 유포되는 주요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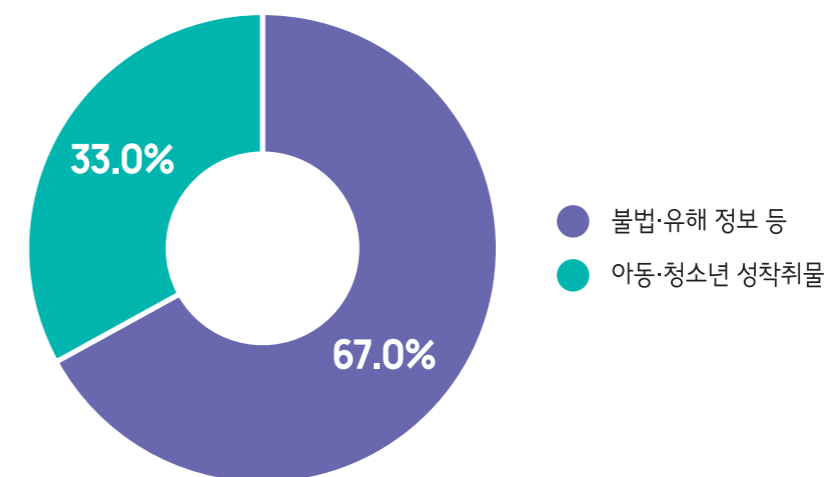
구분	설명
성인사이트	불법촬영물을 포함한 다양한 불법콘텐츠를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용도의 웹사이트
검색엔진	웹상에 존재하는 정보와 웹사이트를 검색하기 위한 플랫폼
P2P	P2P(Peer-to-Peer Network) 방식으로 파일을 교환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
소셜미디어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으로 개인의 생각,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관계를 형성 또는 확장 시킬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
커뮤니티	공통 주제나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 간 공유하며 소통하는 호스팅 사이트
스트리밍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웹하드	인터넷 상에서 확보된 공간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파일 공유 사이트

3) 유형별 현황

(단위: 건)

합계	불법·유해정보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768 (100.0%)	514 (67.0%)	254 (33.0%)

[표 14] 플랫폼별 삭제요청



- 본 센터에서는 피해자의 요청과는 별개로 불법촬영 및 불법유해정보 성매매사이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불법촬영물에 대한 선제적 삭제를 실시했다.
- 2024년 피해자 요청에 따른 삭제지원 및 선제적 삭제 현황 768건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지원한 건수가 254건(33.0%)으로 불법·유해 정보물 등 삭제지원 514건(67.0%)보다 높게 나타났다.
- 2019년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배포·제작에 대한 범죄행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음에도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비율이 높고, 실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등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Chapter.  
03

<b>III 지원사업</b>	<b>35</b>
1. 사업소개	35
2. 사업별 운영 결과	37
1) 아동·청소년 피해회복 및 예방 프로그램	37
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38
3) 여성폭력 예방 콘텐츠 공모전	39
4)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홍보	40
5) 디지털성범죄대응 사이버감시단	41
6) 피해자통합지원 전문가 자문단	42

## III. 지원사업

## 1. 사업소개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다양한 여성폭력 피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365일 24시간 원스톱 통합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III 지원사업

### 1. 사업소개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1	아동·청소년 피해회복 및 예방 프로그램	· 디지털성범죄 직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1:1 성교육 · 부산 내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6회기 집단 예방교육
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 부산지역 내 군 부대 용사·간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및 교육 모니터링 운영
3	여성폭력 예방 콘텐츠 공모전	·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젠더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공모전
4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 홍보	·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5	디지털성범죄 대응 사이버감시단	· 부산시민 30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의 유포 확산방지를 위한 사이버상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6	피해자통합지원 전문가 자문단	· 유관기관 전문가 자문단 활용하여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활성화

## III.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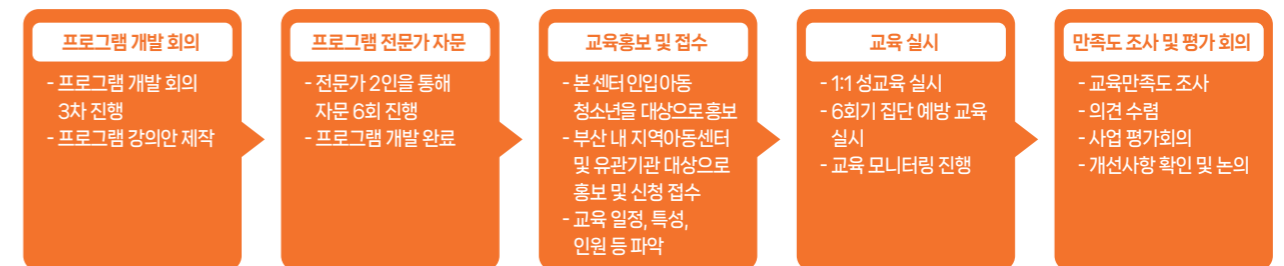
## 2. 사업별 운영결과

## 1) 아동·청소년 피해회복 및 예방 프로그램

- **사업목적** :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신속한 일상 회복 및 선제적 보호
- **기간** : 2024년 1월 ~ 12월
- **대상** : 디지털성범죄 직·간접 피해 아동·청소년
- **내용** : 디지털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1:1 성교육

디지털성범죄 6회기 집단 예방교육

## • 추진방향



## • 사업성과

## 가.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회의

- 일정 : 2024년 4월 18일~5월 28일까지 아동·청소년 피해회복 및 예방프로그램 내용 구성을 위한 전문가 3차 회의 진행

## 나. 프로그램 전문가 자문

- 일정 : 2024년 6월 10일 ~ 7월 19일까지 아동·청소년 피해회복 및 예방프로그램 내용 자문 및 최종 점검을 위한 전문가 자문 6회 진행

## 다. 피해회복 프로그램 운영 (1:1 성교육)

- 일정 : 2024년 6월부터 ~ 10월까지
- 장소 : 이젠센터
- 내용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1 성교육 운영
- 횟수 : 5회

## 라. 피해예방 프로그램 운영 (6회기 집단 예방교육)

- 일정 : 2024년 9월부터 ~ 12월까지
- 장소 : 각 지역아동센터 교육장
- 내용 : 아동·청소년 6회기 집단 예방교육 운영
- 횟수 : 30회

## 마. 프로그램 사업평가 회의

- 2024년 12월 17일 2024년 아동·청소년 피해회복 및 예방프로그램 운영 평가 및 논의

- **사업결과** : 6회기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여 총 35회 교육 운영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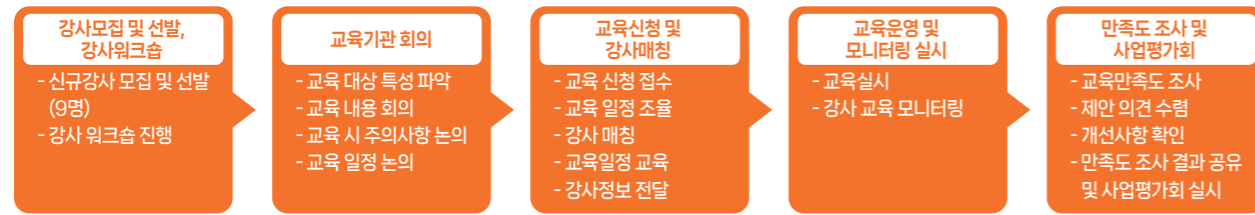
III  
지원사업

## 2. 사업별 운영 결과

- 1) 아동·청소년 피해회복 및 예방 프로그램
- 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 3) 여성폭력 예방 콘텐츠 공모전
- 4)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홍보
- 5) 디지털성범죄대응 사이버감시단
- 6) 피해자통합지원 전문가 자문단

## 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 **사업목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선제적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 **기간:** 연중
- **대상:** 군 부대 용사/간부, 부산 지역내 청소년 등
- **내용:**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딥페이크 중심)
- **추진방향**



### • 사업성과

#### 가. 강사 모집 및 선발

- 모집: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및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위촉 강사 10명 이내 공개모집
- 선발: 강의계획서 및 강의안, 관점, 내용, 전달력, 적절성 등 고려하여 1차(서류 적합 여부), 2차(강의시연)를 통해 강사 9명 선발

#### 나. 강의안 제작/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군 부대 용사-간부용 강의안, 지침서 내용 편집-보완 및 PPT 제작, 배포
-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청소년용 강의안, 지침서 신규 제작 및 배포
- 교육 참여자들 대상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 다.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강사워크숍 진행

-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사업소개, 표준강의안 및 지침 안내, 군 부대 및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특강 진행

#### 라. 교육기관 회의

- 대상: 53사단,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시교육청
- 내용: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운영 및 내용 논의, 교육 신청 및 일정 조율 등

#### 마.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운영 및 모니터링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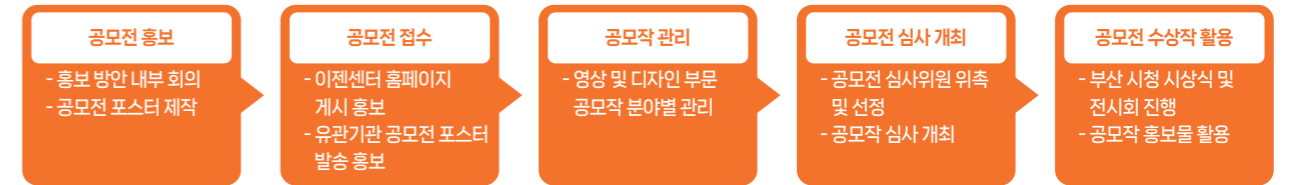
- 군 부대 용사, 간부, 청소년, 양육자 등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155건 실시 완료
- 교육환경, 교육내용, 교육방법, 강사 등 교육 진행 전반에 대한 점검 15회 실시 완료

### • 사업결과: 총 155회(3,122명) 교육 운영 완료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교육운영	21건	21건	25건	24건	49건	13건	2건
총계	155건						

## 3) 여성폭력 예방 콘텐츠 공모전

- **사업목적:** 젠더폭력 및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10대 가해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 젠더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심각성에 대한 환기
- **기간:** 2024년 4월 ~ 11월
- **대상:** 전국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 **내용:** 젠더폭력 및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등) 예방을 위한 메시지가 담긴 영상 및 디자인(카드뉴스, 포스터, 웹툰 등)
- **추진방향**



### • 사업성과

#### 가. 젠더폭력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개최

- 일시: 2024년 11월 24일 ~ 12월 1일
- 장소: 부산 시청 지하 1층 통로

#### 나. 수상 작품 홍보 사업 활용

- 장소: 이젠센터 게시 및 유관기관 게시 홍보



### • 사업결과: 출품작 총 20작(영상 부문 8작, 디자인 부문 12작) 중 최종 10작 선정

#### 4)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 홍보

- **사업목적:**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내용 홍보를 통해 센터로의 접근성을 증대하고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 홍보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효과 창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 **기간:** 2024년 1월 ~ 12월
- **대상:** 대시민
- **내용:** 제 18회 부산시 가족축제 캠페인 진행, 이젠센터 내 카드뉴스 게시, SNS 활용, 딥페이크 영상제작 등

#### • 사업성과

- 가. 제 18회 부산시 가족축제 캠페인
  - 일시: 2024년 5월 18일
  - 장소: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
- 나. 이젠센터 홈페이지 디지털성범죄 관련 카드뉴스 4회 게시
  - 1분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법률 똑똑하게 알아보기!
  - 2분기: 초등학교생이 알아야 할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 3분기: 불법합성(딥페이크) 피해지원 안내문
  - 4분기: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 및 신설 소식!
- 다. 딥페이크 영상제작
  - 광고 장소: 부산광역시 전 지역
  - 옥외전광판: 서면교차로, 연산교차로, 경성대학교
  - IPTV, 대중교통 역사, SNS 및 유튜브
  - TV, 라디오 등 방송 송출: KNN, SBS·KNN 라디오
  - 송출 기간: 2024.12.2.(월) ~ 2024.12.31.(화)

#### • 사업결과: 홍보실적 500건 달성

홈페이지·유관기관 홍보 > 12건	포스터·리플릿 등 홍보물품 제작 > 12건
인스타그램·카드뉴스·웹제작·언론보도 > 16건	기타(게시판·메일·우편 등) > 460건

#### 5) 디지털성범죄대응 사이버감시단

- **사업목적:** 시민감시단의 불법·유해사이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모니터링 및 신고활동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조성하는데에 기여하기 위함
- **기간:** 2024년 4월 ~ 12월
- **대상:** 20세 이상의 부산시민 30명
- **내용:** 사이버감시단을 위촉하여 불법·유해사이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고 활동 진행 (월 25건 이상)

#### • 추진방향



#### • 사업성과

- 가. 사이버감시단 공개 모집 및 선발,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부산광역시장 위촉장 발급)
- 나. 사이버감시단 역량강화 교육(감시단 활동을 위한 사전교육, 인식개선 교육 등)
- 다. 온라인 성매매 광고 및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 라. 사이버감시단 사례회의 및 소진방지 프로그램 진행
- 마. 사이버감시단 활동결과보고서 제작 및 배포

#### • 사업결과

(단위: 건)

구분	월합계	성인사이트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p2p	웹하드	검색엔진	기타	아첨물
6월	751	523	90	3	0	0	3	0	132
7월	751	407	213	2	0	0	0	0	129
8월	758	442	181	9	0	0	0	0	126
9월	759	430	158	8	0	0	0	0	163
10월	769	414	199	0	0	0	0	1	155
11월	819	435	179	1	0	0	0	2	202
합계	4,607	2,651	1,020	23	0	0	3	3	907

### 6) 피해자통합지원 전문가 자문단

- **사업목적:** 법률 및 상담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한 세밀한 초기개입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에 기여
- **기간:** 2024년 1월~12월
- **대상:** 전문가 자문위원 10인
- **내용:** 법률 및 상담 등 전문가 자문 제공
- **추진방향**



#### • 사업성과

- 가. 전문가 자문단 위촉
  - 분야: 상담심리학과 교수, 변호사, 성평등 정책 연구기관 소장,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소속 경찰 등 전문가 10인 위촉
- 나. 연 3회 정기회의 개최
  - 일시: 2024년 7월 9일, 11월 28일, 12월 27일
  - 장소: 이젠센터 1층 회의실
  - 내용: 전문가 자문을 통한 피해자 욕구에 맞춘 지원 방안 마련 및 복합 사례 대응 방안 논의, 변호사 법률 자문 진행을 통한 사건 지원
- 다. 연중 상시 변호사 법률자문 시행

#### • 사업결과: 월별 자문 진행현황

(단위: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법률자문	1	2	1	1	3	-	3	3	1	6	2	1
총계	24											

## 365일 24시간 언제나 곁에 함께하는 이젠센터

이젠센터는 다양한 유형의 여성 폭력 피해에 대응하고 제도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틈새를 매울 수 있는 통합지원시스템 마련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더불어 전문적인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부산형 모델을 구축하여 **살고싶은 부산,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데 기여하겠습니다.





Chapter.  
04

---

<b>IV</b> 부록	47
1. 전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 전문기관	47

## IV. 부록

## 전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 전문기관

연번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운영기관)	연락처
1	부산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	051-802-2082
2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3	서울	서울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02-815-0382
4	경기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1544-9112
5	인천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032-517-5170
6	세종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044-862-9193
7	경북	(사) 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054-2821-1470
8	경남	(사)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055-244-9009
9	충북	청주 YWCA여성종합상담소	043-265-3701
10	충남	아산 해뜰통합상담소	041-547-6004
11	전북	(사)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063-717-1366
12	전남	(사) 행복누리-목포여성상담센터	061-285-1366
13	광주	광주 YWCA가정상담센터	062-521-1365
14	대구	(사) 대구여성의 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053-215-6487
15	대전	대전 YMCA 통합상담소	042-254-3035
16	울산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052-252-8247
17	제주	(사)제주 YMCA 성폭력상담소	064-744-8994

IV  
부록

## 1. 전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 전문기관

